###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2. 5.25.

개정 2022. 6.27. 시행 2022. 6.29.

개정 2022.12.20. 시행 2022.12.20.

개정 2024.11. 7. 시행 2024.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직원"이란 정관 제11조 및 직제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임원과 직제 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 제3호 타목에 따른 임직원을 말한다.
- 3.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4.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①공사는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되,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이해충돌방지담당 관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호, 제2호, 제4호, 제5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윤리경영 담당 실·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 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사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 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의견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이나 본 부장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 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 ④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사장인 경우, 상임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1.7.>
- ⑤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4의2호 서식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기존 제5조제4항에서 이동 2024.11.7.><개정 2024.11.7.>
- ⑥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직원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

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기존 제5조 제5항에서 이동 2024.11.7.>

-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고위공직자는 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 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 ②고위공직자는 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의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 ③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제2항에서 이동 2024.11.7.>
-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임직원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사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 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7.>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

-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단,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27>
-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임직원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공사(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하나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영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 제2항 및 영 제22조 제5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 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17조(교육)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

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법, 영 및 이 지침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이 법, 영 및 이 지침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징 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부 칙 <2022. 5. 25.>

- 1. 이 지침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 부 칙 <2022. 6. 27.>

이 지침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0.>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11.7.>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u> </u>				
	성명		소속		직위(직급	)			
신고·신청인 	① 담당 업무								
	성명		소속						
			·		[	] 개인 ] 단체	_		법인 임직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③ 관련 직무								
	- [ ] 임직원의 직무수 [ ] 한국방송광고진	행과 관련하 흥공사와 계	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	적으로 것이 5	. 받는 개인 명백한 개인	인이나 법 이나 법인	인 또 인 또는	는	단체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H충돌 방지법 <sub>」</sub> 제5조	5에 따라 5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지	나를 신	<u>[</u> 고하고 :	회피를	신청	합니	1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당	명 또	든는 인)

- ① "담당 업무"는 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사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임직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 공립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MIN	٨.٨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임직원
신청인	주소		연락처		
	Lind		TIOL/TI 7)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업무 담당					
임직원					
	신청인의 업무 담당 임직원와 관	<u>관</u> 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 ] 업무 담당 직원이 사적이	기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	  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형	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	· 사적 이해관계가 있	나고 판단	·됨
	[ ] 기타(		)		
기피 신청사유					
윈그키크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띠	나라 위와 같이 임직원의 각	직무 수행 관련 기	기피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범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del>.</del>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신고·신청인 (/ 조		자의 신고 및 회피 의 거래 신고)	신청, 직무 :	관련 부동산 5	セ유·매수 신고	<u>1</u> ,
	[ ] 업무 담당 <u>임</u> 즈	<u> [원 (임직원</u>	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조치대상	성명 ① 관련 직무		소속		직위(직급)		
	[ ] 직무수행의 일 [ ] 직무 재배정		년 [ ] 직무 대리기 [ ] 기타(	다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	지정	
조치결과	[ ] 해당직무 계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필요)
	소속(	) 직위	위(직급)(	) 성	성명(	)	
기타 참고사항							
	해충돌 방지법」제 와 같이 통보합니다		Ų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0	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년	월	일
	이해	충돌방지담!	당관			(서명 또	는 인)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 법인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 점검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② 확인·점검 내용					
③ 확인·점검 결과	[ ] 특이사항 없음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 인)

-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 ②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 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 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③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ㅇㅇ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ㅇㅇ월 예정)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ㅇㅇ월 ㅇㅇ일)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ㅇㅇ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ㅇㅇ 월 ㅇㅇ일)

##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네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앞 쪽)
접수번호	7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① 담당 업무	-	<b>소</b> 속	2	직위(직급)		
	성명 ② 관련 직무		소속	Ç	<u></u> 연락처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 [ ] 한국방송광고진	행과 관련하 흥공사와 계	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접적으로 것이 명:	! 받는 개인이니 백한 개인이나 [	나 법인 또는 법인 또는 단	단체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저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신청 사유							
					년	얼	일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 ① "담당업무"는 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_118 I <sup>-1</sup> 1-1	CCIC BIES	" 1"1 <u>~ "1—</u>	<u> </u>
정명 소 제출인 <mark>직위(직급) 임</mark>	속 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5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	: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u>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u>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		]에는 해당히	는 곳				(앞 쪽)
접수번호	7	접수일			처리의	일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인	00		エ¬			⊣π(¬u)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1-0-1			[ ] 본인	<u> </u>	] 본인의 직계존	트속·비속 [	] 배우자	
거래자	연락처		[ ] 생겨	를 깉	이하는 배우자의	니 직계존속·비	속	
			[ ] ① =	특수괸	계사업자			
	성명		소속		연락처	Г 1 -	71101	1 4101
			_ '				=	] 법인
	(a) N D N H H					[ ] '	단체 [	] 임직원
	② 직무관련자 의 의무수	헤리 고나라	티어 이저희	. 웨이	니 ㅈ뉘르 ㅇㄱ.	ا بامامات ا	버이 ㄸ느	- rl÷II
거래상대방	[ ] 임직원의 직무수형							
71416416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금전 차 <del>용</del>	[]금	전 대부	[	] 유가증권 거	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기대 다 ㄱ(이글)							
	[ ] 부 <del>동</del> 산(토지 또	드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싱	거래		
거래내용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1 11 11 0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	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익	ŧ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717117011				717110101			
	거래금액				거래원인			
ショナ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배충돌 방지법」제9조	에 따라 -	위와 같이	직무:	관련자와의 거리	배를 신고합니	나다.	
						년	월	일
			실	고인			(서밀	병 또는 인)
							,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	리(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채용대상지	성명	주소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	정일
	가	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b> 2 <b>담당하는 직원</b> 이 있는가?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	업무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	성명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주소		
	수의견	예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 업무을 법령상·시실상 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의 <b>감독기관 소속 고위공</b>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b>(4</b>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비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체에 해당하는가?	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 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신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	·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난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 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의 직계 분의 30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2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①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 [ ] 암직원의 직무수 [ ] 한국방송광고진형 [ ] 임직원의 직무수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	행과 관련하( 흥공사와 계약 행과 관련하	여 이익 또는 약을 체결하거 하여 이익 또	· 불이익을 직접 나 체결하려는 ? 는 불이익을 작	d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나 법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처	단체
71- 1-1	일시		사유				
접촉 사항	유형	-		비용부담자			
	[ ] 골프 [ ] 여행	행 [ ] 사	행성 오락	[ ] 신고인	[ ] <u>퇴직 직원</u>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배충돌 방지법」제15.	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	사적 접촉을 신고협	합니다.	
					년	얼	일
			신그	그인		(서명 또	는 인)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		에는 해당하는 곳이					
접수번호	접수	<u>-</u> 일		처리일	<u> </u>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개인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1)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경위 및 이유							
위반행위 신고								
	일시	I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l」위반형	행위를 신고합니	l다.				
					년	월	일	
○○○ 귀중			신고인			(서명	병 또는 인)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방송통신위원회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내용 신고사항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가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710ITI		_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 ] 국민권익위원 위원회 신고 접수	[회	] 방송통신위원회 [ ]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		_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	- 낙처	
위반행위 신고사항						
종결처리	조사기관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방송통신위원회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머
「공직자의 0	해충돌 방지법」위험	반행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	이 종결하였음을 통	·보합니다.	_
				년	월 일	<u> </u>
한국방송굉	고진흥공사 (	이해충돌	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피신고인)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기관		통보일			
통보받은 조치사항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_	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상담일시 상담방법 [ ] 기타( 성명 연락처 상담신청인 직위(직급) 소속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상담유형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